



제1558호
2020년 9월 3일
목요일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 공	고 제 1752 호	보상계획열람공고(만의골 경관광장)	3
○ 공	고 제 1755 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0
○ 공	고 제 1761 호	2020년 9월 취득세 공시송달	12
○ 공	고 제 1771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논현동 소로1-21호선 외 2개 노선, 주차장)사업 실시계획 인가 공고·열람	14
○ 공	고 제 1778 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16
○ 공	고 제 1780 호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20
○ 공	고 제 1787 호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7
○ 의회사무국공고 제 3 3 호		「남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39
○ 의회사무국공고 제 3 4 호		「남동구 청각장애인 부모의 영아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52
○ 의회사무국공고 제 3 5 호		「남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64
○ 의회사무국공고 제 3 6 호		「남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79
○ 의회사무국공고 제 3 7 호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89
○ 의회사무국공고 제 3 9 호		「남동구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109
○ 의회사무국공고 제 4 1 호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120
○ 의회사무국공고 제 4 2 호		「남동구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134
○ 의회사무국공고 제 4 3 호		제26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148
○ 보 건 소 공 고 제 7 8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 말소 예정 공고 식품위생과	149
○ 보 건 소 공 고 제 8 0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 말소 예정 공고 식품위생과	150
○ 보 건 소 공 고 제 8 1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 말소 예정 공고	151

고 시

○ 고 시 제 139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152

회 람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대변인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1752호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광장: 만의골 경관광장】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1일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광장]
 - 명 칭 : 만의골 경관광장
3. 사업의 규모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만의골 경관광장	광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62번지 일원	4,544

4. 보 상 시 기 : 별도 보상통보(개별통지)
5. 보상금지급처 : 남동구청 공원녹지과
6. 보상대상 ※ 조서 참조
 - 토지보상 : 장수동 62번지 외 11필지
 - 지 장 물 : 광장조성 구간에 저축되는 지장물에 한함
7. 보상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거 보상액을 산정하고 개별로 협의체결 후 현금보상
8.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 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불성립 시) ⇒ 공탁

9.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20. 9. 1. ~ 2020. 9. 15. (15일간)

10. 기타사항

-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 ② 토지조서 등은 남동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열람하며 이의가 있으신 분은 공원녹지과에 문의(☎032-453-6292) 또는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구	동					성 명	주 소	지분	성명	주 소	권리종류	
	계				207,787.0	4,544.0							
1	남동구	장수동	62	전	1,157.0	874.0	김**	만수동 ***					
2	남동구	장수동	63-1	전	622	622	최**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526번길 ***		**협동조합	인천 부평구 갈매로 ***	근저당권 설정	
3	남동구	장수동	63-2	전	311	311	최**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526번길 ***		**협동조합	인천 부평구 갈매로 ***	근저당권 설정	
4	남동구	장수동	63-3	전	589	589	남동구						
5	남동구	장수동	63-6	전	359	359	남동구						
6	남동구	장수동	63-8	전	382	382	남동구						
7	남동구	장수동	63-15	전	167	167	국토교통부						
8	남동구	장수동	73	대	210	210	배**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	1/2				
							문**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77길 ***	1/2				
9	남동구	장수동	73-1	대	3	3	박**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					
10	남동구	장수동	74	대	225	225	김**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61길 ***	36/171				
							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	36/171				
							김**	19히드로코트 윌리엄스빌 *** 미국	9/171				
							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	13.5/171				
							김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199번지1호 *	13.5/171				
							김**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	13.5/171				
							김**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	13.5/171				
							신**	미국 07656 뉴저지주 파크릿지 ***	12/171				
							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	8/171				
							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	8/171				
							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	8/17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구	동					성 명	주 소	지분	성명	주 소	권리종류	
11	남동구	장수동	727-2	하	203,758	798	국토교통부						
12	남동구	장수동	730-3	도	4	4	국토교통부						

□ 지장물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용도	구조	수량	단위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명	주 소	성 명	주 소	구분	
1	장수동	63-1, 72, 73, 730-3	건물	블록 / 기와	58.85	㎡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				
			건물	블록 / 기와	27.74	㎡						
			창고	목재	6.00	㎡						
			창고	샌드위치판넬	10.00	㎡						
			비닐하우스	철재 / 비닐	36.00	㎡						
			천막	철재 / 비닐	33.58	㎡						
			천막	철재 / 비닐	24.82	㎡						
			메쉬웬스	철재	20.00	m						
			능형망웬스	철재	94.00	m						
			수목	중국단풍(H5.0)	1	주						
				중국단풍(H3.0)	1	주						
				느릅나무(H3.0)	1	주						
2	장수동	62, 63-6, 727-2	창고	목재	3.75	㎡	김** (엄**)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				
			창고	컨테이너	3.75	㎡						
			화장실	샌드위치판넬	2.94	㎡						

연번	소재지	지 번	용도	구조	수량	단위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명	주 소	성 명	주 소	구분	
			화장실	샌드위치판넬	0.90	m'						
			창고	목재	1.00	m'						
			난로	철재	1	개소						
			물탱크	7플라스틱	1	개소						
			관정	블록 / 함석	2.34	m'						
			비닐하우스	철재 / 비닐	34.76	m'						
			비닐하우스	철재 / 비닐	29.23	m'						
			비닐하우스	철재 / 비닐	21.76	m'						
			천막	철재 / 비닐	60.50	m'						
			천막	철재 / 비닐	20.30	m'						
			천막	철재 / 비닐	13.20	m'						
			천막	철재 / 비닐	9.00	m'						
			비닐하우스	철재 / 비닐	55.88	m'						
			비닐하우스	철재 / 비닐	155.11	m'						
			비닐하우스	철재 / 비닐	126.00	m'						
			창고	목재	11.25	m'						
			비닐하우스	철재 / 비닐	86.02	m'						
			능형망웁스	철재	90.0	m						
			덧발	감자, 상추, 쑥갓 등	540.0	m'						
			상수관	STL	20.0	m						
			우수관	PE	25.0	m						

연번	소재지	지 번	용도	구조	수량	단위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명	주 소	성 명	주 소	구분	
			전기		2	개소						
			수목	오가피나무(H3.0)	12	주						
				모과나무(H4.0)	1	주						
				주목(H4.0)	1	주						
				매실나무(H4.0)	1	주						
				산수유(H2.0)	1	주						
				은행나무(H5.0~3.5)	2	주						
				뽕나무(H2.0)	1	주						
				오미자나무(H1.0)	3	주						
				블랙베리(H0.5)	7	주						
				아로니아(H1.8)	3	주						
				호두나무(H5.0)	1	주						
				보리수(H1.0)	1	주						
				영산홍(H0.5)	5	주						
				느티나무(H5.0)	6	주						
				구찌뽕나무(H2.5)	2	주						
				단풍나무(H3.5)	3	주						
				다래나무(덩굴)	1	주						
				등나무(덩굴)	1	주						
3	장수동	63-3, 63-15		느티나무(H5.0)	2	주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				
				단풍나무(H2.5)	3	주						
				단풍나무(H2.0)	2	주						

연번	소재지	지 번	용도	구조	수량	단위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명	주 소	성 명	주 소	구분	
				전나무(H4.0)	2	주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1755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관내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처리 명령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및 부제 무단진출 수취인불명 소유자 미상 이사 등으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0년 8월 31일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0.8.31. ~ 2020.9.14.
3. 공고대상 : 96노2700의 5대
4. 공고내용

가.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에도 범칙금이 20~30만원이 부과되며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로 범칙금 100~150만원이 부과 됩니다.

나.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법 제 88조 규정에 의하여 방치행위자로 검찰로 송치되어 동법 제8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처리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자진처리명령서 반송 내역서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방치장소 (인천광역시남동구)	수취인명	주 소	발송일자 (1,2차)	미배달사유	견인일자	보관장소	연락처	비고
1	2020-00208	96노2700	대우11.5톤 카고트럭	남동구 고잔동 719-23 PNS인터내셔널 앞	염*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로 ** **2동 **2호(논*동에*****린아파트)	2020.7.24. 2020.8.13.	기타 기타	2020.7.20.	기전산업(주)폐차사업소	032-814-4400	
2	2020-00211	28도3540	SM525V	남동구 논현동 448 킹콩부대찌개 앞 도로변	김*현	경상남도 사천시 사*읍 진*로 1***, **3동 ***3호(사****린)	2020.7.28. 2020.8.13.	폐문부재 폐문부재	2020.7.22.	(주)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3	2020-00214	서울30러4000	NEW EF쏘나타LP G	남동구 논현로 242 단풍마을11단지 1107동 옆 주차장	정*호 외 1인 (고*영)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0길 **4(통*동)	2020.7.28. 2020.8.13.	기타 기타	2020.7.22.	(주)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4	2020-00216	20구8098	프라이드	남동구 앵고개로815번길 22 소래휴먼시아3단지아파트 제1지하주차장 1번 기둥	유*희	경기도 시흥시 신**길 2*-, *동 **2호(신*동, 금**라)	2020.7.20. 2020.8.13.	기타 기타	2020.7.10.	(주)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5	2020-00222	31노9065	스파크 1.0	남동구 은청로 88 한성할스 도로 건너편	(주)신* **고	경기도 광명시 철*로 ***(철*동)	2020.7.24. 2020.8.13.	수취인불명 수취인불명	2020.7.17.	(주)서울폐차사업소	032-442-6660	
6	2020-00231	69어1758	아반떼 (AVANTE)	남동구 남동동로78번길 62 (152블록 3롯데)	YU*** AL***** *R	충청남도 아산시 신*면 읍**길 1*-, *동 **3호	2020.7.24. 2020.8.13.	폐문부재 기타	2020.7.18.	(주)서울폐차사업소	032-442-6660	

공 고

남동구 공고 제 2020-1761호

취득세 고지서 공시송달

성 명 안*근 외 1건

주소 또는 거소 내역별첨

서 류 의 명 칭 2020년 08월 수시분 및 20년 06월 독촉 취득세 고지서

서 류 의 내 용 2020년 08월 수시분 및 20년 06월 독촉 취득세 고지서

위 서류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 “이사”, “반송합장기방치” 및 “폐업” 등으로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능인 바,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납기 2020.08.31.을 2020.09.30.로 변경하여 공시하오니 납기 내 남동구청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20년 09월 01일

남 동 구 청 장

취득세 2020년 08월 수시분 및 2020년 06월 독촉분 공시송달내역

연번	주민법인번호	납세자명	과세번호	공고사유	세액합계
1	600407-*****	안**근	101501-2020-08-2-522-065639	수취인미거주	1,057,080
2	730728-*****	최**모	101501-2020-08-2-522-065652	수취인미거주	1,178,760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177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논현동 소로1-21호선 외 2개 노선, 주차장)사업 실시계획 인가 공고·열람

도시계획시설(도로: 논현동 소로1-21호선 외 2개 노선, 주차장)사업의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도시재생과(☎032-453-2955)에 갖추어 놓았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3일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67-1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 명칭: 논현동 소로1-21호선, 소로1-22호선, 소로(특)3-1호선, 주차장 조성 공사

3. 사업규모

- 소로1-21호선: L=36m, B=10m, A=377㎡
- 소로1-22호선: L=244m, B=10m, A=2,597㎡
- 소로(특)3-1호선: L=21m, B=4m, A=85㎡(보행자 전용도로)
- 주차장 A=1,031㎡(주차대수: 39대)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주)디에스파트너스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17번길 12, 301호(구월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 ~ 2021.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노현동)	지 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767-1	대	14,721	4,090	**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			
소 계			14,721	4,090					

7. 열람 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8. 열람 장소

- 남동구청(도시재생과 032-453-2955, 남동구 소래로 633)

9. 관계 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1778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등)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09월 02일

남 동 구 청 장

1. 처 분 명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20. 09. 02 ~ 2020. 09. 17(15일간)
3. 공고대상 : 별 첨
4. 공고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또는 게시판)
5. 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의한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을 공고하니 자동차 사용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자동차 사용자라 한다) 및 실제운행자는 운행정지 명령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운행정지 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 : 자동차 사용자와 실제운행자가 다르면서 자동차관리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 위반 등(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세 체납, 과속·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등 의 지속)을 하고,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및 그 밖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행정지 명령에 해당 된다고 판단되는 자동차

나.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2조 2의2호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6. 문의처 :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1)

연 번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소유자명	사용본거지주소	등록일
1	인천31누7846	시어로오토	김갑수(상품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방축로 414, 간석자동차매매단지211 (3.6.5상사)(간석동)	2020.08.28
2	인천1노5733	쏘나타오토매틱	3.6.5상사(김갑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방축로 414, 1층 자동차용품 31/5(간석동)	2020.08.28
3	25모1329	쏘나타투1.8	김갑수(상품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방축로 414, 간석자동차매매단지 211(간석동)	2020.08.28
4	인천32더2056	쏘나타투1.8	김갑수(상품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방축로 414, 간석자동차매매단지211 (3.6.5상사)(간석동)	2020.08.28
5	26너7617	티뷰론티볼런스오토매틱	김갑수(상품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방축로 414, 간석자동차매매단지211 (3.6.5상사)(간석동)	2020.08.28
6	인천80러7078	갤로퍼2벤	김갑수(상품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방축로 414, 간석자동차매매단지211 (3.6.5상사)(간석동)	2020.08.28
7	인천32머1584	크레도스	김갑수(상품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방축로 414, 간석자동차매매단지211 (3.6.5상사)(간석동)	2020.08.28
8	인천31거7582	스포티지	김갑수(상품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방축로 414(간석동)	2020.08.28
9	인천80머5873	봉고프런티어	김갑수(상품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방축로 414, 간석자동차매매단지 211 3.6.5상사(간석동)	2020.08.28
10	34너0489	BMW 520d	박*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서로17번길 21,	2020.08.28
11	인천32고2756	파사트(Passat)	김갑수(상품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방축로 414, 간석자동차매매단지 211(3.6.5상사)(간석동)	2020.08.28
12	35나0599	그랜저(GRANDEUR)	메리츠캐피탈(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42-1, 301호(구월동, 오성빌딩)	2020.08.27
13	53하8932	G80	신한카드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11(구월동)	2020.08.27
14	36저7038	SM5 LPli	이*애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곡중앙로 163,	2020.08.27
15	124더4141	A7 55 TFSI quattro	폭스바겐파이낸셜서 비스코리아(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79, 3층(구월동)	2020.08.27
16	13마8824	짚그랜드체로키	나경자(상품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방축로 414, 216호(간석동, 간석매매단지)	2020.08.26
17	12여4878	K5	이*민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247번길 25,	2020.08.26
18	93머7759	포터II(PORTERII)	박*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개동로 18-22,	2020.08.25
19	63하2558	아반떼(AVANTE)	신한카드(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11(구월동)	2020.08.25
20	126모8907	G80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42-1, 301호(구월동, 오성빌딩)	2020.08.25
21	52소5717	캐딜락 CT6	메리츠캐피탈(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42-1, 301호(구월동, 오성빌딩(신차인천영업소))	2020.08.24
22	137머5046	카니발	이*욱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936	2020.08.24

23	28너4545	아반떼 (AVANTE)	염*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60,	2020.08.21
24	44호1167	K5	신한카드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11(구월동)	2020.08.21
25	58도2539	쏘나타(SONATA)	심*철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26번길 12,	2020.08.18
26	31구5625	원스톱2.0S디젤	박*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촌로36번길 9,	2020.08.14
27	344무3797	G80	삼성카드(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85(구월동)	2020.08.13
28	71하9795	그랜드 스타렉스(GRAND STAREX)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11, 9층(구월동)	2020.08.13
29	66루4973	체어맨W	이*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815번길 70,	2020.08.13
30	325어5581	Mercedes-AMG GT43 4Matic +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51(구월동)	2020.08.13
31	61하0264	레이	신한카드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11(구월동, 인천지점)	2020.08.12
32	51하0384	레이	신한카드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11(구월동, 인천지점)	2020.08.12
33	40호8729	아베오 1.4	신한카드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11(구월동)	2020.08.11
34	135구3951	토요타 Avalon Hybrid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리로 76(구월동)	2020.08.10
35	128호3450	G80	신한카드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11(구월동)	2020.08.07
36	55조1843	쏘나타(SONATA)	송*옥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26번길 7,	2020.08.06
37	46호8008	그랜저(GRANDEUR)	신한카드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11(구월동)	2020.08.05
38	53라9104	MINI Cooper D Clubman	메리츠캐피탈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42-1, 301호(구월동, 오성빌딩)	2020.08.05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1780호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2일

남 동 구 청 장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기존 성적으로 선발하였던 장학금 지급 대상범위를 예체능과 학업모범 분야 등으로 확대하여 수급자 자녀의 장학금 지급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자함
- 상위조례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학금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지급 대상범위를 확대 : (안 제4조)
- 성적순이 아닌 사회적 약자 및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우선 지급대상으로 선발 : (안 제7조제2항)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 9. 22.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남동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 보낼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복지정책과

○ 연 락 처 : ☎ 453-2503, FAX 453-257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자료

○ 전부개정규칙(안) : 별첨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0년 9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기존 성적으로 선발하였던 장학금 지급 대상범위를 예체능과 학업모범 분야 등으로 확대하여 수급자 자녀의 장학금 지급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자함
- 상위조례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장학금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지급 대상범위를 확대 : (안 제4조)
- 성적순이 아닌 사회적 약자 및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우선 지급대상으로 선발 : (안 제7조제2항)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참고자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안 제2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1조 : (안 제3조제2항)
-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제13조 : (안 제4조~제9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복지 지원사업) ①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10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및 전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지원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으로 하는 사람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원사업의 기대효과
8. 지원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기금운용 채원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1. 지원사업내용의 적정여부
2.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3.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제3조(불우 이웃 지원사업) ① 조례 제10조제6호에 의한 대상사업은 재해, 화재, 질병, 기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그 대상세대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이와 유사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관할 동장은 대상세대에 대한 별지 제1

호서식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지원요청서를 제출 받은 구청장은 당해연도 기금운용범위에서 지원방법 등을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장학금의 종류 및 신청자격) ① 조례 제10조제5호에 따른 장학금의 종류는 성적장학생, 특기장학생, 모범장학생으로 한다.

② 장학생 신청자격은 선발계획 공고일 현재 남동구 관내에 주소를 둔 수급자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성적장학생 : 직전 학기 학업성적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학생
2. 특기장학생 : 직전 학년 또는 직전 학기 전국 시·도 단위 이상의 예체능 분야 및 문학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 또는 학교장이 해당분야 특기자로 추천한 학생
3. 모범장학생 : 선행, 효도, 봉사활동에 모범이 되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제5조(장학생의 선발시기 등) ① 장학생 선발은 매년 하반기 1회로 하며, 해당연도 9월까지는 지급완료 하여야 한다.

②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각 종류별 장학금 지급인원, 지급액, 지급시기 등 장학금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금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 및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학금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추천 및 선발) ① 제6조에 따른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자격을 확인한 후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장이 추천한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추천인원이 지급대상자의 인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가정, 소득이 적은 가정의 학생, 학업성적 또는 입상성적이 우수한 학생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선발한다.

제8조(장학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장학금은 장학생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제9조(장학금의 지급정지) 장학금 지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1. 정학·퇴학·제적 등 학사처분을 받았거나 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

였을 경우

3.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였을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피해사실확인서

(제3조제2항 관련)

발급번호: 제 호

피해자	주소	
	성명	생년월일

피해 내용

대상	단위	피해 규모	피해물의 소재지	피해 일시	재해의 종류

용도

제출처

위 사람이 소유(경작)하고 있던 재산에 위와 같이 피해가 있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일 일

신청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남동구청장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함.

이
의
의

○○○ 동 행정복지센터

직인

※ 이 확인서는 발급일부터 3개월간 유효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2호서식]

장 학 금 신 청 서

(제6조 관련)

1. 보호자 인적사항 (세대주)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2. 학생 인적사항				
학 적	학 교	학 년	반 (과)	
성 명				
생년월일	(남,여)	보호자와의관계		
3. 장학구분 : ① 성적장학생(), ② 특기장학생(), ③ 모범장학생()				
4. 가구특성 및 재산사항 등				
중증장애 세대여부	1급() 2급() 중복장애등()	학생과의 관 계		
소득인정액	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인			
※ 계좌번호 : 은행명(), 번호(), 예금주()				
첨부 1. 성적장학생 : 성적증명서 2. 특기장학생 : 입상 상장 또는 학교장 추천서 3. 모범장학생 : 학교장 추천서 위와 같이 ○○○○ 학년도 남동구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을 지급받고자 신청합니다. ○○○○ 년 ○○ 월 ○○ 일 위 신청인 성명 (인)				
위와 같이 위 학생을 ○○○○ 학년도 남동구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합니다. ○○○○ 년 ○○ 월 ○○ 일 추천인 동장(직인)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장학생 추천대상자 명단

(제7조 관련)

○○ 동

[illegible]

※ 작성요령

- ② 성적장학생의 '성적점수'란은 성적증명서, 특기장학생의 '상장 또는 추천서'란은 상장 또는 학교장 추천서, 모범장학생의 '추천서'란은 학교장 추천서를 확인하여 기재

[별지 제4호서식] (제8조 관련)

제 호

장 학 증 서

학교 학년

성명

위 학생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므로
년도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이 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남 동 구 청 장

[참고자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2조)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서) ① 법 제16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의 금액
4.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안 제3조제2항)

제71조(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① 법 제74조에 따라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확인서(이하 "피해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그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피해사항을 작성하여 피해시설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4조~제9조)

제10조(사회복지사업) 제4조제1항제1호의 기금계정에서 기금을 지원하거나 지원받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비용
2.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보호자를 포함한다)의 복지지원
3.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및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4.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사업
5. 수급자 자녀의 장학금 지급사업
6. 그 밖에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한 지원

제11조(사회복지사업의 지원대상) 제10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한 주민이거나 소재

를 둔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전체에 걸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제10조제5호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수급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 또는 예체능 분야 등에서 우수한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인원 및 지급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제13조(장학생의 선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동장은 제1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매년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2. 구청장은 제1호에 따라 동장이 추천한 학생 중에서 장학생을 선발한다.

[現 조례 시행규칙]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0.01.31 규칙 제492호
(일부개정) 2002.05.15 규칙 제 559호
(일부개정) 2009.03.27 규칙 제722호
(일부개정) 2019.11.15 규칙 제101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27., 2019. 11. 15.)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란 직전학기에 이수한 학업성적 중 성취도 미(70점 이상~80점 미만) 이상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2. 5. 15, 2009. 3. 27., 2019. 11. 15.)
② 제1항에 따른 학업성적에 있어서 고등학교 신입생의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의 성적으로 하며, 중학교 신입생의 경우 중학교 배치고사 성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3조(석차 백분율) (삭제 2009. 3. 27.)

제4조(선발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학년도 학기 개시 후 20일 이내에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거주지 동장에게 장학금 신청서(별지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제5조(추천 및 선발) 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1.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장학금 지원대상 인원을 결정한다. (개정 2019. 11. 15.)
2. 제4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제2조에 관한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매학기 개시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추천(별지 제2호 서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3. 구청장은 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발하며, 추천인원이 지급대상자의 인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 중증장애인가정, 재산 및 소득이 적은 사람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7., 2019. 11. 15.)

제6조(장학금 지급액) 장학금의 지급액은 매년 당해 학년도 중·고등학교별 수업료 및 입학금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게 장학증서(별지 제3호서식)와 함께 장학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② 장학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학기 개시 후 60일 이내에 선발된 장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학년도 초에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해당 학년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 11. 15.)

제8조(장학금지급의 정지)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개정 2002. 5. 15, 2009. 3. 27., 2019. 11. 15.)

1. 제2조제1항에 따른 학업성적이 기준에 미달된 경우 (개정 2009. 3. 27.)
2. 정학·퇴학·제적 등 학사처분을 받았거나 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개정 2002. 5. 15.)
4. 보호자 또는 본인이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였을 경우 (신설 2002. 5. 15.)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지급한 장학금은 회수하지 않으며, 학년도중 지급할 장학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한다.

제9조(사회복지 지원사업) ① 조례 제1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및 전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9. 11. 15.)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지원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으로 하는 사람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개정 2019. 11. 15.)
 7. 지원사업의 기대효과
 8. 지원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9. 11. 15.)
- ③ 구청장은 전 각 항에 따른 기금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기금운용 자원법내에서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개정 2019. 11. 15.)
1. 지원사업내용의 적정여부
 2.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3.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제10조(불우 이웃 지원사업) ① 조례 제12조제6호에 의한 대상사업은 재해, 화재, 질병, 기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그 대상세대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이와 유사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를 말한다.

②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관할 동장은 대상세대에 대한 사실확인조사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지원요청서를 제출 받은 구청장은 당해연도 기금운용범위 내에서 지원방법 등을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폐지규칙) 이 규칙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남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93. 3. 5 규칙 제281호) 및 인천광역시남동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95. 2. 20 규칙제352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2. 5. 15. 규칙 제5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3. 27. 규칙 제7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1014호, 2019. 11. 15.)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1787호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남동구 관내에 무단방치 된 차량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강제처리 전 권리를 행
사할 수 있도록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게시관, 시·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3일

남 동 구 청 장

- 1. 공 고 기 간 : 2020.9.3. ~ 2020.9.17.
- 2. 강제처리(폐차) 일시 : 공고이후
- 3. 강제처리(폐차) 장소 : 남동구 관허 폐차장
- 4. 이해관계인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 86부2895
- 5.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무단방치 자동차의 이해관계인(저당권자, 압류권자)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
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종료까지 권리행사가 없을 시 그 권리를
포기함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폐차)할 예정입니다.
- 6. 기타사항: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 7. 문 의 처: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무단방치담당(☎ 032-453-2822)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폐차)처리대상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내역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소유주	생년월일	사용본거지	구분	채권자/축탁기관/단속부서	등록일자	저당가액/ 공문번호/ 단속공무원	압류내역/ 영치내역
2020-00141	86부2895	액티언스포츠	(주)이****설	121-81-7****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길 4*서**당**3호(구*동)	저당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캐피탈 *저당물부번호 : 2824-2006-004073	2006.06.22	10,000,000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0-33호

남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남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8월 27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지원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 (안 제1조, 제2조)
- 지원대상 및 지원액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 제4조)
-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 출산지원금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
- 출산지원금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0. 8. 27. ~ 9. 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오용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343
----------	------

발의년월일 : 2020년 8월 27일
발 의 자 : 오용환 의원
찬 성 자 : 조성민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지원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 (안 제1조, 제2조)
- 지원대상 및 지원액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 제4조)
-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 출산지원금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
- 출산지원금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없음”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9조
-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30조
-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이하 “출산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유고 등으로 인하여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신생아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액) 출산지원금은 부 또는 모 중 한 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 신생아 1명당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을 한 번만 지급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신생아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별지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을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 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 사항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지원금의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

[별지 서식]

장�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서(제5조 관련)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애유형 및 정도	
	신청와의 관계			
출생아	성명		출생일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남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이
이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동 구 청 장 귀하

※ 동 복지담당자 기재란

출산자 일반사항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남동구 거주기간	
확인자 동 직급 성명 (인)				
구비서류	1. 예금통장 사본 1부			

[별지서식 뒷면]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4조에 의거 본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목 적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 자격 확인
- 제공받는 기관 : 남동구 사업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
- 개인정보 조회·열람·활용 동의 내용
 - 출산사실이 기재 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및 열람
 - 등록장애 정보 확인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1. 비용발생요인**

- 「남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액)에 따른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참고 】 최근5년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급현황(1인당1백만원)

구 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심한 장애	8명	7명	5명	6명	5명

※ 2020년부터 시비로 지급된 남성(심한)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은 1명 1백만원 지급함.

위와 같이 최근5년간 심한 장애 장애인 출산비용 연평균 지급액이 720만원으로 조례에 따른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작성자 :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참고자료]

장애인가정 출산 장려금 지원 현황

여성배우자	남성배우자	지원사항
장애인	심한 장애인	국비사업 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인	국비사업 100만원
장애인	비장애인	국비사업 100만원
비장애인	심한 장애인	시비사업 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비장애인	비장애인	-

※ 국비사업 : 국70, 시15, 구15

※ 시비사업 : 시100

유사 지원 사례

- 여성장애인출산장려금(국) : 출산 시 100만원
- 심한 장애인 4명, 심하지 않은 장애인 : 8명
- 남성장애인배우자 출산비(시) : 출산 시 산모 기준 100만원
- 아이맘 사업(시) : 출산 시 무조건 100만원
- 출산장려금(구) :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2018. 12. 24.>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

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0-34호

남동구 청각장애인 부모의 영아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청각장애인 부모의 영아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8월 27일

남동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청각장애인 부모 영아자녀의 언어발달 활성화와 이들의 정확한 언어구사 능력을 도모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과 사회 적응 능력을 배양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
- 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제6조)
-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
-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 : (안 제9조)
- 지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 (안 제10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0. 8. 27. ~ 9. 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청각장애인 부모의 영아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재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344
----------	------

발의년월일 : 2020년 8월 27일

발 의 자 : 최재현 의원

찬 성 자 : 정재호 의원 외 4명

□ 제안이유

- 청각장애인 부모 영아자녀의 언어발달 활성화와 이들의 정확한 언어구사 능력을 도모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
- 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제6조)
-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
-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 : (안 제9조)
- 지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 (안 제10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9조
-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30조의2, 제32조의6
- 「영유아보육법」 제4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청각장애인 부모의 영아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각장애인 부모의 영아자녀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언어발달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2. “영아자녀”란 2세 이하의 아이로서 청각장애인 부모(부 또는 모 어느 한쪽만 청각장애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자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아자녀를 대상으로 언어발달 시책을 수립하고 언어발달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언어발달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영아자녀의 특성을 고려하여 언어 성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아자녀의 언어발달 돌봄과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남동구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람 중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 한다.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아의 언어발달 지원을 위해 수어가능자가 가정방문을 통한 영아의 언어발달 돌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 사항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협조하지 않거나 지도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비용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중단) 조례 시행 이후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같은 사유로 영아 언어발달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영아자녀의 언어발달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등이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

관에 제공·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지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등 영아의 언어발달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남동구 청각장애인 부모의 영아 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지원내용)에 따른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언어발달 도우미 1인 인건비
 - 장애인 일자리 : 23,600천원 - 최저임금 적용 : 20,000천원

위와 같이 언어발달 도우미 연평균 금액이 20,000천원~23,600천원으로 조례에 따른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작성자 :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참고자료]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지원

-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 2(장애인 가족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의 만12세 미만 비장애아동
 - 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 장애인
- ※ 중위소득 120% : 3인가구 4,645천원/ 4인가구 5,699천원
- 지원내용 : 언어발달진단 서비스 및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 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놀이지도, 수어지도 등
- 지원기준 : 본인부담금 0원~6만원 <최대 바우처 지원액 22만원>
- 지원현황 : 총 10명(청각 5, 지적 3, 시각2)

언어발달 재활서비스 필요예산

- 1일 월 소요액 : 45,000원*주2회*4주=360,000원

청각장애인 부모 현황

- 부모 모두 청각장애인 : 5가구/ 자녀7명
- 한쪽 부모 청각장애인 : 21가구/ 자녀 29명
- 계 26가구/ 36명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2018. 12. 24.>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 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2. 8.]

제32조의6(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17. 12. 19.>

1. 복지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장애인학대 등 안전문제 또는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

은 장애인에 대한 방문 상담

3. 복지서비스 신청의 대행
 4. 장애인 개인별로 필요한 욕구의 조사 및 복지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지원
 5. 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
 6. 복지서비스 등 복지자원의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7. 그 밖에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업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장애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9.>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지원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장애인 지원 사업과 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9.>
 [본조신설 2015. 6. 22.]
 [제32조의4에서 이동 <2017. 12. 19.>]

□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3.>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1. 8. 4.>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0-35호

남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8월 27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동구에 거주하는 방역취약 계층에 대한 방문방역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 (안 제1조, 제2조)
- 방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신청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 제4조)
- 방문방역기동반 편성 및 위탁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제6조)
- 방역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 장비 및 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
- 대장 비치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안 제9조, 제10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0. 8. 27. ~ 9. 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 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광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345
----------	------

발의년월일 : 2020년 8월 27일

발 의 자 : 유광희 의원

찬 성 자 : 조성민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동구에 거주하는 방역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방역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 (안 제1조, 제2조)
- 방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신청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 제4조)
- 방문방역기동반 편성 및 위탁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제6조)
- 방역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 장비 및 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
- 대장 비치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안 제9조, 제10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없음”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9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동구에 거주하는 방역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대상주택의 실내·실외 방역을 말한다.
2. “방역취약계층”이란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으로 소독 및 위생해충 구제에 취약한 사람으로 구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대 및 차상위계층 세대
 - 나.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 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
 - 라.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세대 및 북한이탈주민 세대
 - 마.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3. “대상주택”이란 구에 소재한 주택 중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말한다.

제3조(방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방역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대상 주택에 대한 방문방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신청 등)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방역취약계층의 세대주 및 세대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방문방역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방역 신청은 세대 당 연 1회로 한정한다.

제5조(방문방역기동반 편성) 구청장은 방문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구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을 둔다.

제6조(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소독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방역 수수료) 제4조에 따른 방문방역은 무료로 한다.

제8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 비치 등) ① 구청장은 방문방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문방역 접수 처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방역약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라 소독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보건소장은 매년 1회 이상 방문방역 운영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방 문 방 역 신 청 서(제4조 관련)				
신 청 자	세대주 성명		주 소	
	생 년 월 일		연락처	
	주택형태	☐ 아파트 및 공동주택 (m ²) ☐ 단독주택		
해당란에 표기	○ 방역 희망 일시(20 .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 국가유공자, 장애인(1급-3급) 또는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 다문화가정 세대, 사할린 한인 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세대 [] 기타 세대()			
「남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방문방역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정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업무처리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정보의 확인 조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호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남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2. 비용추계 결과**가. 추계의 전제**

- 일반 현황

(단위 : 세대, 명)

합 계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심한 장애인	다문화 가 정	사할린 및 북한이탈주민	65세이상 독거노인
57,622 / 72,831	18,329 / 26,648	2,844 / 7,053	4,087 / 4,087	9,757 / 9,757	3,955 / 6,539	2,331 / 2,428	16,319 / 16,319

(2020년 6월 말 기준)

나. 추계 결과

- 대 상 : 방역취약계층 중 신청인원 연간 1,000명(1.7%)
-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산 출 기 초
차량유지 관리비	3,000	자동차세 등 차량유지관리비 및 유류비
소독장비 구입	1,000	초미립자 분사 소독기 2대
소독약품 구입	9,000	살균제, 살충제, 바퀴구제제 등
합 계	13,000	

- 소요예산 : 13,000천원

다. 자원조달 방안

- 방역인력·장비 : 기존 인력·장비 활용
- 방역예산 : 방역소독사업 예산 활용
- 방문방역 : 1일 최대 5가구 기준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4. 부대의견 : 없음**

작성자 : 남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한석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13,000	13,000	13,500	14,000	14,500	68,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13,000	13,000	13,500	14,000	14,500	68,000
	지방세	13,000	13,000	13,500	14,000	14,500	68,000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2018. 12. 24.>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 의무)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

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3. 4.>

② 제1항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3. 4.>

③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3. 4.>

④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020. 3. 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 보건소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51조제1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른 소독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 12. 31., 2020. 6. 4.>

③ 법 제51조제1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른 소독의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 6. 4.>

④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별표 7의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4.>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2019. 4. 23.>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0-36호

남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남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8월 27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을 근거로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기본원칙,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 (안 제1조~제3조)
-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 추진상황 점검·평가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
-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
-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안 제9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0. 8. 27. ~ 9. 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오용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346
----------	------

발의년월일 : 2020년 8월 27일
발 의 자 : 오용환 의원
찬 성 자 : 이선옥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을 근거로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기본원칙,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 추진상황 점검·평가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
- 지역사회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
-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안 제9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없음”

□ 참고자료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주민 모두가 참여하고 구, 기업, 민간단체 등이 서로 협력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기업활동 속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계획과 정책은 이 조례의 기본원칙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에 구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장이 수립한 지방추진계획에 따라 지역실정에 적합한 구 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구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상황 점검·평가 등) ① 구 추진계획에 포함된 시책 및 사업 관련 부서 또는 기관에서는 소관분야별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자체 점검·평가하여 녹색성장업무 담당부서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녹색성장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점검·평가결과를 종합평가 한다.

③ 구청장은 종합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구 추진계획을 변경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게 예산지원 또는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① 구청장은 구의 공공건축물이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물과 교통, 도로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운동장·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친환경 녹색사무실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보유 공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경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여 저탄소·고효율 교통수단을 확대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구청장은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 숲 및 녹색길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충
2. 에너지·자원 자립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3. 지역의 폐금속자원 재활용시스템 구축
4. 그 밖에 지역사회의 녹색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① 구청장은 주민 및 기업들이 녹색 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기업·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녹색생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기업, 단체, 공동주택, 학교, 기관 등에 표창·인센티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촉진 등에 기여
 2.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하기 위한 관련 사업 참여 및 감축실적 우수
 3. 자원 절약, 재활용, 폐기물 감량 등 녹색생활 확산에 기여
 4. 그 밖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사업 참여 및 추진실적 우수
- ④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에 소속 공무원이 솔선 참여하도록 하고 참여자에 대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주민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 및 주민 등에게 녹색생활 실천과 관련된 교육·홍보를 강화하여야 하며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학교교육 지원 및 일반교양, 기초평생교육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 및 홍보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녹색생활 실천 교육 및 홍보활동(홍보전단지 등 홍보물 구입, 교육 강사비 지출)에 수반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됨.

작성자 : 환경교통국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참고자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0-37호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8월 27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방범시설 등 설치 기준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침입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명을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조례」로 함
- 조례의 정의, 기본원칙, 책무에 관한 사항 정비 : (안 제2조~제4조)
제2조 제4호·제5호·제6호 신설 : “침입범죄”, “침입범죄 위험성 등 평가”, “방범시설”의 용어 정의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정비 : (안 제5조)
- 방범시설 등 설치기준 등 신설 : (안 제8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0. 8. 27. ~ 9. 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용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347
----------	------

발의년월일 : 2020년 8월 27일

발 의 자 : 오용환 의원

찬 성 자 : 이선옥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방범시설 등 설치 기준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침입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명을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조례」로 함
- 조례의 정의, 기본원칙, 책무에 관한 사항 정비 : (안 제2조~제4조)
 - 제2조 제4호·제5호·제6호 신설 : “침입범죄”, “침입범죄 위험성 등 평가”, “방범시설”의 용어 정의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정비 : (안 제5조)
- 방범시설 등 설치기준 등 신설 : (안 제8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건축법 제53조의2
- 산업표준화법 제12조, 제25조
-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2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를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을 설치하는데”로 한다.

제2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에 대한 침입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
5. “침입범죄 위험성 등 평가”란 침입범죄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근 피해사례,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대한 방호시설 구비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6.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의 제품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디자인”을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조명”을 “조명, 방범문, 방범창 및 잠금·경보장치”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축물의 창호 등을 통한 침입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적합한 방범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도시디자인 추진을”을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를”로, “추진하고자 노력”을 “적극 추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기업 등에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에 대한 기준 준수 및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 계획(이하)”를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디자인의”를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호(중전의 제4호) 중 “도시디자인 추진”을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추진”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방법시설 등 침입방지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및 제2항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인천 범죄예방지도 및 범죄발생 현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도시디자인”을 “도시디자인 및 방법시설 등 설치”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9조를 제12조로 하며,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방법시설 등 설치기준 등) ① 구청장은 침입범죄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근 피해사례,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대한 방호시설 구비여부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침입범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침입범죄 위험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설치를 지원하는 방법시설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 및 제25조에 따른다. 제12조(중전의 제9조)의 제목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법시설 등 설치 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디자인 추진”을 “도시디자인 및 방법시설 등 설치 추진”으로, “도시디자인 위원회”를 “도시디자인 및 방법시설 등 설치 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디자인”을 “도시디자인 및 방법시설 등 설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디자인 추진”을 “도시디자인 및 방법시설 등 설치 추진”으로 한다.

제13조(중전의 제12조) 중 “도시디자인 추진”을 “도시디자인 및 방법시설 등 설치 추진”으로 한다.

제14조(중전의 제13조) 중 “도시디자인과”를 “도시디자인 및 방법시설 등 설치와”로 한다.

제15조(중전의 제14조) 중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도시디자인 및 방법시설 등 설치 추진사업”으로 한다.

제16조(중전의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포상)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법시설 등 설치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법시설 등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 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 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 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1조(목적) ----- ----- ----- 도 시디자인 및 방법시설 등을 설 치하는데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신설>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에 대한 침입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 5. “침입범죄 위험성 등 평가”란 침입범죄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근 피해사례, 침입 의 용이성 및 이에 대한 방호 시설 구비여부 등에 대한 평 가를 말한다. 6. “방법시설”이란 침입범죄 등
<신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 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 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 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 5. (생략) <신설>	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문, 방 범창, 방법용 망창, 방법용 창 살, 창호용 잠금장치 및 정보 장치 등의 제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 도시디 자인 및 방법시설 등 설치----- -----. 1. ----- ----- 조명, 방법문, 방 범창 및 잠금·정보장치 --. 2. ~ 5. (현행과 같음) 6. 건축물의 창호 등을 통한 침 입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 하여 관련 규정에 적합한 방 범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한다. 제4조(책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 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 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노 력하여야 한다. <신설>
제4조(책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 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 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노 력하여야 한다. <신설>	제4조(책무) ① ----- 도시디자인 및 방법시설 등 설 치를 ----- 적극 추진----- -----.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기업 등에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 시디자인 및 방법시설 등 설치 에 대한 기준 준수 및 관련 시 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 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구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구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 계획(이하“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 <신 설>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신 설>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 도시디자인 및 방
범시설 등 설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
-----.

1. (현행과 같음)
2. 제9조-----
3. ----- 도시디자인 및 방법
시설 등 설치 -----
4. 방법시설 등 침입방지 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

5. ----- 도시디자
인 및 방법시설 등 설치 추진

--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계획
을 해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및 제2항의 시행계획을 효율적
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인
천 범죄예방지도 및 범죄발생
현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
한 기준) ① -----
도시디자인 및 방법시설 등 설

수 있다.

- ② (생 략)

<신 설>

제8조 (생 략)

제9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
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범죄예
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
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둘 수 있다.

1. (생 략)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치-----.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방법시설 등 설치기준 등)

① 구청장은 침입범죄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근 피해사
례,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대한
방호시설 구비여부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침입범죄에 취약하
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침입범죄 위험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설치를 지원하는 방법시설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 및 제
25조에 따른다.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12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법시설 등 설치 위원회의 설
치) ① -----
-- 도시디자인 및 방법시설 등
설치 추진----- 도시디자
인 및 방법시설 등 설치 위원회
-----.

1. (현행과 같음)
2. ----- 도시
디자인 및 방법시설 등 설치-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생 략)

② (생 략)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 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및 인천남동경찰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대상 사업의 협의) 구의 각 부서의 장은 범죄 예방 도시디자인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에 대해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 도시디자인 및 방법 시설 등 설치 추진-----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협력체계 구축·운영) ----- 도시디자인 및 방법시설 등 설치 추진-----

-----.

제14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대상 사업의 협의) ----- 도시디자인 및 방법시설 등 설치와 -----
-----.

제15조(홍보) ----- 도시디자인 및 방법시설 등 설치 추진사업-----
-----.

제16조(포상)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법시설 등 설치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안 제8조(방법시설 등 설치기준 등) 및 제9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와 관련 방법시설 설치를 위하여 시책 추진에 따른 비용 발생

※ “방법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문, 방법창, 방법용 망창, 방법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의 제품을 말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방법시설 설치 등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됨

작성자 : 환경교통국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참고자료]

건축법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표준화법

제12조(한국산업표준) ①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산업표준을 한국산업표준(KS)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이 아니면 한국산업표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25조(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조달하려는 때에는 인증제품·인증서비스 또는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법 제53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1.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5.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6. 노유자시설
7. 수련시설
8.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9.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5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 공공 공간에 대하여 시각적인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조경, 조명 등을 통하여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접근통제"란 출입문, 담장, 울타리, 조경, 안내판, 방범시설 등(이하 "접근통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진·출입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역성 확보"란 공간배치와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격공간과 사적공간의 소유권 및 관리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4. "활동의 활성화"란 일정한 지역에 대한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상 공간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설물 및 공간 계획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주"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6. "설계자"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설계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2. 영 별표 1 제3호가목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일용품 판매점)
3. 영 별표 1 제4호거목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4.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5. 영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도서관을 제외한다.)
6. 영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영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8. 영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업무시설(오피스텔)
9. 영 별표 1 제15호다목의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
10.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② 삭제

제2장 범죄예방 공통기준

제4조(접근통제의 기준) ① 보행로는 자연적 감시가 강화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다만, 구역적 특성상 자연적 감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반사경 등 자연적 감시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지 및 건축물의 출입구는 접근통제시설을 설치하여 자연적으로 통제하고, 경계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외벽에 범죄자의 침입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영역성 확보의 기준) ① 공적(公的) 공간과 사적(私的) 공간의 위계(位階)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공간의 경계 부분은 바닥에 단(段)을 두거나 바닥의 재료나 색채를 달리하거나 공간 구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판, 보도, 담장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활동의 활성화 기준) ① 외부 공간에 설치하는 운동시설, 휴게시설, 놀이터 등의 시설(이하 "외부시설"이라 한다)은 상호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지역 공동체(커뮤니티)가 증진되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적절한 외부시설을 선정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조경 기준) ① 수목은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수목을 식재하여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축물 내부로 범죄자가 침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조명 기준) ① 출입구, 대지경계로부터 건축물 출입구까지 이르는 진입로 및 표지판에는 충분한 조명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구역은 사물의 식별이 쉽도록 적정하게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조명은 색채의 표현과 구분이 가능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빛이 제공되는 범위와 각도를 조정하여 눈부심 현상을 줄여야 한다.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의 설치) ① 이 기준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주·야간에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제3장 건축물의 용도별 범죄예방 기준

제10조(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기준) ① 대지의 출입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 출입구는 영역의 위계(位階)가 명확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출입구는 자연적 감시가 쉬운 곳에 설치하며, 출입구 수는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범위에서 적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3. 조명은 출입구와 출입구 주변에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담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1. 사각지대 또는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자연적 감시를 위하여 투시형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3. 울타리용 조경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고 1미터에서 1.5미터 이내인 밀생 수종을 일정한 간격으로 식재하여야 한다.

③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

1.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주민 활동을 고려하여 접근과 자연적 감시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터는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나 건축물의 출입구 주변 또는 각 세대에서 조망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하고, 주변에 경비실을 설치하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경비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

1. 경비실은 필요한 각 방향으로 조망이 가능한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2. 경비실 주변의 조경 등은 시야를 차단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소에 고립지역을 상시 관망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경비실·관리사무소 또는 단지 공용공간에 무인 택배보관함의 설치를 권장한다.

⑤ 주차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

1. 주차구역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내부 감시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조명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3. 차로와 통로 및 출입구의 기둥 또는 벽에는 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소와 연결된 비상벨을 25미터 이내 마다 설치하고, 비상벨을 설치한 기둥(벽)의 도색을 차별화하여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여성전용 주차구획은 출입구 인접지역에 설치를 권장한다.

⑥ 조경은 주거 침입에 이용되지 않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⑦ 건축물의 출입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

1. 출입구는 접근통제시설을 설치하여 접근통제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출입구는 자연적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반사경 등 대체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출입구에는 주변보다 밝은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출입구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권장한다.

⑧ 세대 현관문 및 창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

1. 세대 창문에는 [별표 1](#)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과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세대 현관문은 [별표 1](#)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과 도어체인을 설치하되, 우유투입구 등 외부 침입에 이용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는 금지한다.

⑨ 승강기·복도 및 계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

1. 지하층(주차장과 연결된 경우에 한한다) 및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승강기 내부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계단실에는 외부공간에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창호를 설치하고, 계단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⑩ 건축물의 외벽은 침입에 이용될 수 있는 요소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하고, 외벽에 수직 배관이나 냉난방 설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표면에서 지상 2층으로 또는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 등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⑪ 건축물의 측면이나 뒷면, 정원, 사각지대 및 주차장에는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반사경 등 대체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⑫ 전기·가스·수도 등 검침용 기기는 세대 외부에 설치한다. 다만, 외부에서 사용량을 검침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⑬ 세대 창문에 방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 발생 시 피난에 용이한 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11조(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100세대 미만의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관한 사항)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100세대 미만) 및 오피스텔은 다음의 범죄예방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세대 창호제는 [별표 1](#)의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한다.
2. 세대 출입문은 [별표 1](#)의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

의 설치를 권장한다.

3. 건축물 출입구는 자연적 감시를 위하여 가급적 도로 또는 통행로에서 볼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하되, 부득이 도로나 통행로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에 반사경, 거울 등의 대체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4. 건축물의 외벽은 침입에 이용될 수 있는 요소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하고, 외벽에 수직 배관이나 냉난방 설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표면에서 지상 2층으로 또는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 등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측면이나 뒷면, 출입문, 정원, 사각지대 및 주차장에는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적절한 조명 또는 반사경을 설치한다.
6. 전기·가스·수도 등 검침용 기기는 세대 외부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만, 외부에서 사용량을 검침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담장은 사각지대 또는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8. 주차구역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주차장 내부 감시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조명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9. 건축물의 출입구, 지하층(주차장과 연결된 경우에 한한다),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승강기 내부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권장한다.
10. 계단실에는 외부공간에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창호 설치를 권장한다.
11. 세대 창문에 방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 발생 시 피난에 용이한 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12.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적용을 권장한다.

제12조(문화 및 집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에 대한 기준) ①

출입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

1. 출입구는 자연적 감시를 고려하고 사각지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출입문, 창문 및 셔터는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로비 등에 설치하는 유리출입문은 제외한다.

② 주차장의 계획에 대하여는 [제10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 차도와 보행로가 함께 있는 보행로에는 보행자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일용품 소매점에 대한 기준) ① [영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24시간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출입문 또는 창문은 내부 또는 외부로의 시선을 감소시키는 필름이나 광고물

등을 부착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③ 출입구 및 카운터 주변에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카운터는 배치계획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에서 상시 볼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고 경비실, 관리사무소, 관할 경찰서 등과 직접 연결된 비상연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다중생활시설에 대한 기준) ① 출입구에는 출입자 통제 시스템이나 경비실을 설치하여 허가받지 않은 출입자를 통제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출입구에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한다.

③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부터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전용출입구의 설치를 권장한다. 다만, 오피스텔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0-39호

남동구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안

「남동구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8월 28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9조에 따라 구민의 수상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상안전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 수상안전교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수상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관계기관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0. 8. 28. ~ 9. 2.(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남동구의회 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6,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안 (김안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349
----------	------

발의연월일 : 2020년 8월 28일

발 의 자 : 김안나 의원

찬 성 자 : 이정순 의원 외 3명

□ 제안이유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9조에 따라 구민의 수상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상안전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 수상안전교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수상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관계기관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없음”

□ 참고자료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9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9조에 따라 구민의 수상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상안전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상안전교육”이란 남동구민이 수상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수상 안전사고 발생 시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수상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수상안전교육센터”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남동구가 설립한 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으로 수상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3. “수상안전교육 전문 인력”이란 수상안전교육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수상인명구조원 강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수상안전교육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는 등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수상안전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상안전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상·재정상의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수상안전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수상안전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상안전교육 계획수립 및 운영
2. 수상안전교육 시행에 대한 평가
3. 수상안전교육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
4. 수상안전교육에 필요한 재정 지원
5. 그 밖에 수상안전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수상안전교육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6조(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 간사는 수상안전교육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수상안전교육 활동지원) 구청장은 수상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수상안전교육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수상안전교육 행사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수상안전교육 활성화 등에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상안전교육에 공적이 있거나 수상안전교육 지도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수상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구청장은 다양한 수상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상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수상안전교육 전문 인력 양성) 구청장은 수상안전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영입 및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수상안전교육 전문 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남동구민이 수상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수상 안전사고 발생 시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수상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에 관한 조례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됨.
→ 제1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 구민의 수상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급상황 발생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 조례로 공단 운영 수영장(수상안전교육센터) 수강생들의 수영 강습시 일정기간(4회차 내외)을 수상안전교육 시간으로 할애 및 이에 대한 행·재정상의 지원사항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거나 연평균 50,000천원 미만의 비용이 예상되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작성자 : 정책기획국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참고자료]

관계법령 검토와 발체사항

관련법령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9조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련법령]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약칭 : 안전교육법)

제9조(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안전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0-41호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8월 28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남동구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구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정책실명제의 대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정책의 실명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0. 8. 28. ~ 9. 2.(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남동구의회 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86,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반미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348
----------	------

발의연월일 : 2020년 8월 28일

발 의 자 : 반미선 의원

찬 성 자 : 조성민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남동구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구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정책실명제의 대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정책의 실명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없음”

□ 참고자료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남동구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구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4호에 따른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등) ①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정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구정현안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1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단, 중앙행정기관이나 인천광역시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수립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

업은 제외

3.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4.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5.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사업 또는 정책
 6.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정책의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자를 포함한다.

제4조(정책의 실명 관리) ① 구청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 내용
- ② 구청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사업부서 담당자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언론기관에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 자료에 사업부서·담당자·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5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

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업무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추진 실적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남동구 정책자문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7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①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구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관리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목록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 선정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이력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정책실명제의 평가 등)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해당년도에 추진된 사업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사업부서에 대하여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제7조제1항 관련)

①등록번호	②정책명	③사업부서	④담당자

<기재항목>

-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20-1, 2020-2)
 ② 정책사업명 : 사업명 기재
 ③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④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

(제7조제3항 관련)

① 사업부서		② 담당자 (연락처)	
③ 정책사업명			
④ 선정기준		⑤ 사업기간	
⑥ 주요내용			

<기재항목>

- ①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② 담 당 자 :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③ 정책사업명 : 추진하는 정책사업명을 기재
 ④ 선정기준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해당 기준을 기재
 ⑤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종료 시점 기재
 ⑥ 주요내용 : 사업의 목적 또는 추진배경, 추진계획 및 주요 추진 상황(예산포함) 등 사업 전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이력서

(제7조제3항 관련)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20-01	사업부서 작성 자	(부서명 / 담당명) (성명 / 사무실연락처)
정 책 명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추진기간 : ○ 총사업비 : ○ 주요내용 -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 추진실적은 필요한 경우 별첨할 수 있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1. 비용발생요인**

○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제정안으로 인한 비용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작성자 : 정책기획국 기획예산과장 김녕

[참고자료]

관계법령 검토와 발채사항

관련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련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기준 및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0-42호

남동구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8월 28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제안이유
 - 농업의 경쟁력 향상 및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와 방법을 마련하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 주요 내용
 - 제정 목적, 정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지원 대상, 방법 및 사업 결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 입법예고 기간 : 2020. 8. 28. ~ 9. 2.(5일간)
-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남동구의회 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6,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규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350
----------	------

발의연월일 : 2020년 8월 28일

발 의 자 : 황규진 의원

찬 성 자 : 김안나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농업의 경쟁력 향상 및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와 방법을 마련하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 주요내용

- 제정 목적, 정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지원 대상, 방법 및 사업 결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없음”

☐ 참고자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시행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농지법시행령」 제3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농업의 경쟁력 향상 및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시책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와 방법을 마련하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남동구에 주소를 두고 경작하는 농지가 남동구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작물재배업을 하는 사람
나. 「농지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다만, 제3호는 제외한다)

3. “농업단체”란 「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 등록된 품목농업인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 중 농작물재배업을 하는 경작지가 남동구인 연구회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남동구 농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단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2. 농업단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절차는 구청장이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6조(지원사업 결정) 제4조의 사업에 대한 지원 결정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반영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따라 구성된 남동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림분야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의 지원 대상, 조건, 방법, 지원율 등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조례안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에서 농업인 및 농업단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 규정.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제1호 해당)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제1항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은 2013년 ~ 2016년까지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연평균 14,225천원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됨.

작성자 : 재정경제국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참고자료]

관계법령 검토와 발체사항

관련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시행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농지법시행령」 제3조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련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 농지법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이하 "시·군·구 정책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시·군·구 정책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군·구 정책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심의회·협의회·협의체 등 명칭을 불문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과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실·과·소 등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구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기획예산과를 말한다. (개정 2019. 12. 27.)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규칙 등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
2.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 ② 구청장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총괄부서의 장은 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의 장이 동일인의 위원 중복 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미리 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구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참여자가 모집 인원내 부족할 때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어려울 때
3. 긴급하거나 특정한 안건의 심의 등을 위한 한시적 위원회로 설치할 때
4. 그 밖에 위원 공개모집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때
- ③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할 때 위원회의 고유 기능과 관련 있는 사람을 우선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 중 동일인이 4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특수 전문분야 전문가 또는 여성위원을 위촉할 때
2.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한시적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
3.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촉할 때

제6조(유사위원회의 활용 등) 구청장은 설치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유사한 위원회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고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였을 때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9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 등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② 이해관계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용역·공사의 금지)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입찰, 해당 위원회 공동으로 참여하는 구정 자문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존속 기한)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필요로 하거나 긴급한 사안이라고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구청장이 요구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지 못할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등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하면 분과(실무)위원회, 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부서의 장 또는 업무담당자이며 서기는 업무담당 또는 소속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비공개로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⑥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참석자, 심의안건, 발언내용,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관계전문가·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
2. 심의수당 :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 지급
3. 여비 :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위원에게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경비 지급

제15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① 구청장은 매년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적과 예산집행 내용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 평가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로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는다.

③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회로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관련 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제9조(보조대상 사업)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인천광역시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한 경우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 제2020-43호

제267회 남동구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김안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267회 남동구의회(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일 시 : 2020년 9월 8일(화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남동구의회 본회의장

2020년 9월 2일

남동구의회 의장 임애숙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20-78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0.09.11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20. 08.26. ~ 2020. 09.10(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휴게음식점	2017-0200007	구월토종닭	현*숙	인주대로710번길 10, 2층 전부호(구월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0.07.16	2020.09.11

6. 고지사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20.09.10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2

2020년 08월 26일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20-80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0. 9. 17.
3. 처분 근거법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4. 공 고 기 간 : 2020. 9. 2. ~ 2020. 9. 16.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10-0200031	리파헬스케어	주**	방축로 501, 5동 909호 (간석동, 우성아파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9-08-31	2020-09-17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12-0199090	한국효소 연구학회	임**	경인로 585 (간석동, 3층)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7-02-09	2020-09-17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17-0200500	(주)에스제이 파트너즈가죽	이**	남동대로916번길 58, 2층 전부 (간석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0-07-27	2020-09-17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19-0203115	네이처스토리	이**	백범로 404, 도사예창 1402호 (간석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9-10-30	2020-09-17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2019-0202098	케이지식품	서**	인주대로 557, 4층 1호 (구월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0-02-06	2020-09-17

6. 고지사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에 따라 2020. 9. 16.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남동구보건소 식품위생과 유통식품팀 ☎ (032)453-2752

2020년 9월 2일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20-81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0.09.16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20.09.01. ~ 2020. 09.15(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일반음식점	2002-02001458	퀸왕포차퀸 (Queen)	배*희	남동대로916번길 6(간석동,105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0.08.28	2020.09.16

6. 고지사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20.09.15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2

2020월 09월 01일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0-139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31일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 558 (간석동) 외 3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21-1 (구월동) 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 (2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06-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 558 (간석동)	20090706	예전 주안면과 다소면에는 돌과 우물이 많았다는 유래에서 제명	20200831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석정로 558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558을 건물 번호로 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72-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21-1 (구월동)	20091116	인하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08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00831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인하로507번길 21-1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1-1을 건물 번호로 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29-2	인천광역시 남동구 함박외로377번길 24-44 (남촌동)	20091116	함박외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78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00831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함박외로377번길 24-44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4-44를 건물 번호로 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29-9	인천광역시 남동구 함박외로377번길 24-34 (남촌동)	20091116	함박외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78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00831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함박외로377번길 24-34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4-34를 건물 번호로 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72-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21-1 (구월동)	2020.8.31.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테마모텔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29-2	인천광역시 남동구 함박외로401번길 15 (남촌동)	2020.8.31.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